

#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

2020. 2.

교 육 부

## 목 차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학사운영 방안 .....	1
III. 등록금 징수 등 관리방안 .....	5
IV. 학생 지도방안 .....	6
V. 기타 안내사항 .....	6
VI. 적용 및 유의사항 .....	7

## I

### 추진배경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이하 '감염증')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, 학생 학습권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'20학년도 1학기 개강연기 권고'
  - ※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('20. 2. 5.)
- 이에, 대학 학사일정 조정 등에 따른 안정적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

## II

### 학사운영 방안

#### □ 개강연기

- 학년도 및 학기 개시일(개학)은 현행 학칙을 따르되,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자율적으로 개강연기하고, 이후 학사일정은 순연 또는 감축

#### 【고등교육법】

제20조(학년도 등) ① 학교의 학년도(學年度)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② 학기·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
※ 통상, 개강일 등 학사일정은 학칙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으로 정함

#### □ 수업일수

- 학교의 수업일수(매 학년도 30주 이상)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운영 가능
-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(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)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 운영

**【고등교육법 시행령】**

**제11조(수업일수)**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,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학점당 이수시간)**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,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□ **학교의 수업일수 감축 시,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**

- 주중 아침·야간, 주말, 공휴일 등을 활용하여 수업시간을 편성·운영하되, 학교 홈페이지(해당 교과목 게시판) 과제 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
- 학기별 각 전공(학과)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(현행 100분의 20내)은 **2020학년도 1학기에 적용 배제**
  - '20. 2월 중 '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' 개정 예정
- 중국 체류 유학생의 원활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확대 및 일반 교과목에 원격수업 적극 활용

<현행 「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」 중 관련 내용>

- ◆ 학기별 각 전공(학과)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개설·운영
- ◆ 원격수업 교과목이란, 평가활동(중간-기말 등)을 제외한 교수·학습 활동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
- ◆ 원격수업이 아닌 일반 교과목의 경우, 평가활동(중간-기말 등)을 제외한 교수·학습 활동의 70% 미만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 가능  
(예시) 학점당 이수시간 15시간(평가활동 2시간 포함)인 경우, 9시간까지 원격수업 가능(13시간×70%=9.1시간)

-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'교과별 수업 일수'의 제한 없이 집중수업 운영 가능

**【고등교육법】**

제22조(수업 등)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 
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  
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(實習學期制)를 운영할 수 있다.

**【고등교육법 시행령】**

제11조(수업일수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.  
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.  
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  
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,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(수업 등)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, 학사 관리, 교육 시설·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**【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(생략)】**

□ **출석기준**

-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
  - 다만, 이수요건, 절차, 충분한 대체 및 보완 방안 등의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, 과제 중심 수업의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에 따른 환류 제공

-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
-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증상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

**【고등교육법 시행령】**

제14조(학점당 이수시간)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,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  
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□ **신·편입생 등 휴학**

-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·편입생 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
- 학칙으로 재학생\* 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

\*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,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

**【고등교육법】**

제23조의4(휴학)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.  
 1. 「병역법」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 
 2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 
 3.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
 4.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

### Ⅲ

## 등록금 징수 등 관리방안

### □ 등록금 징수기일 및 반환

-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를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임
  - 다만,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 납부기한 연장
-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등록금 반환 일정 등을 충분히 안내
  -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록금 반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◆ 「고등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단서에서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, 학칙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학기개시일은 3월 1일이 됨

#### 【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】

제5조(징수기일) ① 등록금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,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전으로 할 수 없다. 다만, 사립의 학교(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)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 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 (이하생략)

제6조(등록금의 반환)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  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.  
1. 법령에 따라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
2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
3.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
3의2.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(除籍)된 경우

#### 【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\_별표(생략)】

## □ 강사료 지급

-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를 기존 지급시기(3월 말~4월 초)대로 지급

※ 3월 초 개강 시, 개강 기준 강사 강의료를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지급하는 대학이 다수

## IV 학생 지도방안

- 신입입생, 재학생, 휴학생 등 모든 재적생에게 개강일, 개강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안내
- 재적생 전체 대상 감염증에 대한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, 행동요령 등 교육\*, 대학 내 연락처 등을 마련하여 공지

\*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(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732, 2020. 2. 5.) 참조

## V 기타 안내사항

- 고등교육통계의 경우 학생, 교원, 직원 및 조교, 강좌에 관한 기초 통계는 상반기 조사기준(4.1.)을 동일하게 적용
  -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정기 공시(4·6·8·10월) 및 수시 항목\* 101개 항목 관련 당초 기준 적용
- \* 총원율 및 재적생 등 고등교육통계 공시연계 항목은 4.1. 기준일 적용
- 개강연기, 수업일수 감축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평가 지표와 관계없음



## VI 적용 및 유의사항

-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기는 2020학년도 1학기로 함
- 개강연기에 따른 학사운영에 있어 수업일수, 출석기준, 휴학 등과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
- 학사운영은 학칙 및 학칙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근거하되, 학칙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학내 협의를 통해 개정하여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
- 평생교육원, 공개강좌,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